

2026년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사업 안내

1 법적 근거



☞ 위험성평가란?

사업주가 스스로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·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,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.

☞ 위험성평가 목적:

위험성평가의 목적은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으며,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해·위험요인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.

☞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는?

사업주 주도 하에

-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
- ② 관리감독자
- ③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
- ④ 대상작업의 근로자가

다함께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

☞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는?

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

- ▶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
 - ▶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(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·보존)
 - ▶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), 제16조(관리감독자), 제17조(안전관리자), 제18조(보건관리자), 제19조(안전보건관리담당자) 및 제62조(안전보건총괄책임자)
- :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☞ 고용노동부고시 고시

제2024-76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

※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el.go.kr>)→정보공개 → 법령정보 → 훈령·예규·고시

2 지원대상 및 절차

☞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사업 소개

구분	위험성평가 컨설팅	위험성평가 인정
소개	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컨설팅 해드립니다.	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요건에 충족한 경우 "위험성평가 인정서"를 발급하여 드립니다.
대상	전 업종(건설업 제외):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종: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 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원 (토목공사 150억원) 미만 건설공사	전 업종(건설업 제외):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종: 총 공사금액 120억원(토목공사 150억원) 미만 건설공사

☞ 신청 방법: 위험성평가 컨설팅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신청

- ① 온라인 신청: [산업안전포털\(https://portal.kosha.or.kr\)](https://portal.kosha.or.kr)→사업신청·조회
- ② 오프라인 신청: (붙임)신청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 (E-mail: jghil@kosha.or.kr / Fax: 042-632-3619 / Tel: 042-620-5655)

☞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?

- 산재보험요율 20% 인하
- ※ 50인 미만 제조업, 임업, 위생및유사서비스업, 하수도업에 한함
-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 보조금 1,000만원 추가 지원
- KOSHA-MS 컨설팅 및 실태심사 비용 지원 등

☞ 인정의 취소:

인정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인정 취소

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인정
-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
 - 사망재해
 - 3개월 이상 요양자 동시 2명 이상
 - 부상 또는 직업성질병 동시 10명 이상
- 근로자 부상(3일 이상 휴업)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
- 산업재해 발생건수, 재해율 등이 공표된 사업장
- 사후심사 결과, 인정기준 미충족
- 사업주 자진 취소
- 그 밖에 인정취소가 필요한 사업장

3 심사 기준

☞ 인정심사 항목 및 배점:

심사 항목	만점 (X)	① 항목별 득점 (Y)	가중치 (α)	② 종합점수 (Y/X×α=Z)
합 계			100	
I. 사업주의 관심도	100		10	
II. 위험성평가 실행수준	100		60	
III.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	100		25	
IV. 재해발생 수준	100		5	
[감점] 재발방지대책 미이행	△5		-	

- ① 인정심사는 4개 분야에 대하여 각 100점이 배점되어 있으며, 한 분야 이상 **과락(70점 미만)**이 발생할 경우 **불인정** 판단
- ② 분야별 득점에 대하여 가중치를 적용(100점 환산)하고, **종합점수 90점 이상**인 경우 위험성평가 **인정** 판단

☞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:

심사 항목	심사 기준	배점	득점
I. 사업주의 관심도		100	
1. 활동체계구축	○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방침 및 목표 수립	10	
	○ 위험성평가 담당자 지정 및 역할 분담 등 조직 구성	10	
2. 교육	○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/ 담당자 교육 이수	30	
	○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	20	
3. 예산	○ 연간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	10	
4. 재해예방노력	○ 작업 전 안전점검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	20	
II. 위험성평가 실행수준		100	
1. 계획 수립	○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관리	5	
	○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활용	5	
2. 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결정	○ 사업장 유해·위험요인 파악	20	
	○ 유해·위험요인별 위험성 수준 결정	5	
3.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이행	○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	20	
	○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	20	
4. 지속적 개선	○ 위험성평가의 정기·수시평가(또는 상시평가) 실시	10	
5. 결과 공유	○ 위험성평가 결과의 현장 근로자 공유	15	
III.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		100	
1. 사업주/임원 (현장소장 포함)	○ 위험성평가 활동에 대한 사업주의 참여와 지원	40	
2. 관리자 (관리감독자)	○ 위험성평가 실행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	30	
3. 근로자	○ 위험성평가 실행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및 이해 수준	30	
IV. 재해발생 수준		100	
1. 재해발생 수준	○ 동일 업종·규모별 재해를 대비 사업장 재해율	100	
[감점항목]		△5	
재발방지대책 미이행	○ 재해발생에 따른 수시위험성평가 미실시 등	△5	